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7가단299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나20046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7가단29972 판결

전문

원 고 A문중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김덕현, 임세진

변론종결 2020. 8. 20.

판결선고 2020. 11.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D 임야 1,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2. 12. 28. 접수 제1489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씨 F의 17세손이자 G의 현손인 H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2.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1. 19. 교환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3,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적도 없고, 처분하기로 하는 총회 결의를 한 적도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C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1. 5. 1. 성문화된 규약을 제정하고, 2005. 11. 6. 그 규약을 일부 개정하였고,

시제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위 각 규약에 따라 대체로 매년 음력 10월 5일의 시제일에 맞추어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왔는데, 2004. 11. 17. 시제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I을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2) I은 2011. 10. 15. 종중원들에게 2011. 10. 31. 10:00 임원선출 등을 안건으로 총회(시제)를 개최한다는 안내문을 통지하였고, 원고의 일부 종중원들은 2011. 10. 31. 남양주 J에 있는 K 제각에서 시제를 지낸 후 10:30경 I의 주재로 원고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I의 후임으로 B을 원고의 새로운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3) 한편, 원고의 다른 일부 종중원들은 2011. 10. 31. 위와 같이 I이 주재한 정기총회가 종료된 이후인 12:30경 위 제각에서 L의 위임을 받은 M의 주재로 원고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N를 원고의 새로운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하고, 정기총회일을 ‘한식일 또는 대보름 전후 주말(일요일 아님)로 소집통보하여 개최한다’고 변경하는 등으로 종중규약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4) 이후 원고의 일부 종중원들은 종래와 같이 2005. 11. 6.자 개정규약에 따라 시제일에 맞추어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B의 후임으로 O을, 다시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O의 후임으로 P을 각 원고의 새로운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하였고, 한편 원고의 다른 종중원들은 2011. 10. 31.자 개정규약에 따라 한식일 또는 대보름 전후 주말로 소집통보한 날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03년도 정기총회에서 N의 후임으로 Q을, 2005년도 정기총회에서 Q의 후임으로 R을, 2017. 4. 2. 정기총회에서 R의 후임으로 C을, 2018. 3. 4. 정기총회에서 C의 후임으로 S를 각 원고의 새로운 대표자 회장으로 각 선임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 회장은 형식적으로 두 명이 병존하여 왔다.

(5) C은 2017. 12. 28. 원고의 대표자 회장의 자격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6 내지 10, 12, 13, 16 내지 20호증, 을 제1, 2, 4, 9, 11, 12,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 10. 31. 12:30경 M이 주재한 정기총회에서 N를

회장으로 선임하고, 규약을 개정한 결의는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I 또는 B의 적법한 소집통지 및 의사진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위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순차 이루어진 Q, R, C, S를 각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C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어 C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나머지 점들을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I이 2010. 12. 11. 원고의 회장에서 사임하여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종중의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247 판결 등 참조), 갑 제1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I의 회장 사임 의사표시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I의 회장 사임 의사표시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하여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 의하여 소집통지 및 의사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2011. 10. 31. 12:30경 N를 회장으로 선임하고, 규약을 개정한 결의는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판사 정효채